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24
----------	-----

제출연월일 : 2007. 5. 4.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 가. 유사업종인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업종구분 혼란 및 업종 차등에 따른 민원해소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나. 지나친 요금격차로 요금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영업용 요금을 업무용 수준으로 인하하여 요금 격차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원가의 75% 수준인 가정용 요금을 현실화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며
- 다. 학교, 사회복지시설, 수영장,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누진단계 적용을 완화함으로써 요금부담을 경감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 및 기업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유사업종인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현행 5종인 상수도 업종을 4종으로 간소화하고, 영업용 요금을 14.1% 인하하며 원가에 미달하는 가정용 요금은 9.0% 상향 조정함(안 별표 2, 별표 4).
- 나. 업종구분표중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함.(안 별표 4).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수도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대전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2007. 3. 28)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3) 입법예고 : 2007. 4. 6 ~ 4. 25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7년 7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 ②(유효기간) 별표 2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및 기업의 101m³ 이상 사용 요금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2]

업종별요금표(제26조 관련)

구분 업종	사용량 (m ³ /월)	m ³ 당 요금(원)	비 고
가정용	1~20	370	※공용급수전은 m ³ 당 370원 일괄적용 ※사회복지시설의 41m ³ 이상 사용요금은 m ³ 당 580원 적용
	21~40	580	
	41 이상	760	
일반용	1~50	520	※계량기미설치 소방용수는 개소당 10,400원 적용 ※학교(초·중·고), 수영장, 대덕연구개발 특구 입주기관 및 기업의 101m ³ 이상 사용요금은 m ³ 당 710원 적용
	51~100	710	
	101 이상	880	
목욕용	1~700	470	
	701~1000	550	
	1001 이상	610	
전용공업용		170	

업종 구분표 (제 27조 관련)

업종구분	업	태
1.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인장업, 행정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등으로서 16㎡ 이하의 소규모가게 및 이와 유사한 업소 ○ 경로당(노인회관),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가정 보육시설 ○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단체 (다만, 사업체 제외) ○ 신문보급소, 장애인이 운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2. 일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업태 	
3. 목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목욕탕겸용 이발소 포함) 	
4. 전용공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배·급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공급되는 것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업종별요금표(제26조 관련)				[별표 2] 업종별요금표(제26조 관련)			
구분 업종	사용량 (m ³ /월)	m ³ 당 요금(원)	비고	구분 업종	사용량 (m ³ /월)	m ³ 당 요금(원)	비고
가정용	1-20	340	※공용급수전은 m ³ 당 340원 일괄 적용	가정용	1~20	370	※공용급수전은 m ³ 당 370원 일괄적용 ※사회복지시설의 41m ³ 이상 사용요금은 m ³ 당 580원 적용
	21-40	500			21~40	580	
	41이상	680			41 이상	760	
업무용	1-50	520	※계량기미설치 소방용수는 개소당 10,400원 적용	일반용	1~50	520	※계량기미설치 소방용수는 개소당 10,400원 적용 ※학교(초·중·고), 수영장,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기관 및 기업의 101m ³ 이상 사용요금은 m ³ 당 710원 적용
	51-100	710			51~100	710	
	101이상	880			101 이상	880	
영업용	1-50	650	※임시용은 m ³ 당980원 적용	목욕용	(생략)		
	51-100	810					
	101이상	980					
전공업용	(생략)			전공업용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4] 업종구분표(제27조 관련)		[별표 4] 업종구분표(제27조 관련)	
업종구분	업태	업종구분	업태
1.가정용	(생략)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6㎡ 이하의 소규모가게 및 이와 유사한 업소 ○경로당(노인회관), <u>고아원</u> , <u>양로원</u> , <u>놀이방</u>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 및 원호단체(다만 사업체 제외)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1.가정용	(현행과 같음) ○----- <u>행정사업</u> ----- <u>만화가게</u> ----- ○-- <u>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u> , <u>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u> , <u>가정 보육시설</u> ○----- <u>보훈단체</u> ----- ○--- <u>장애인이 운영</u> ---
2.업무용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업태 ○공·사설소화전 ○지하도 무료화장실(상가겸용 제외) ○소방용수	2.일반용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업태
3.영업용	○식품접객업, 식품보존업 ○이·미용업소(실면적 33㎡이하 제외)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시설규모(연면적 830㎡ 욕실, 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이하의 안마시술소 ○숙박업(여인숙 제외) ○금융기관(제2금융권 포함, 전당포 제외) ○병·의원(국·공립병원, 대학부속병원 제외), 기축병원 ○공연장, 유기장업, 오락장, 노래방 ○대형점, 도매점, 시장 및 상가점, 대규모 소매점 ○자동차정비업, 세차장, 주유소, 가스충전소(석유판매소 제외) ○화물자동차운수사업(20㎡이하는 제외), <u>창고업</u> 주차장업 ○관광업(단순관광 알선업 제외) ○양조업 ○예식장, 장의예식장(장의사 제외) ○전문사진 현상소(사진관 제외) ○사설학원(교습소 제외), 독서실 ○유원지 운영업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제외) ○오피스텔, 리조트 및 이와 유사한 업소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임시용(최종단계 요율적용)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은 입주시까지 증·개축 건축물은 제외) ·운반급수 ·수도관 파손 또는 공사시 출수되는 누수량 ○고시원(텔)등 ○기타 시장이 정하는 업태	3.목욕용	(현행과 같음)
4.목욕용	(생략)	4.전용공업용	(현행과 같음)
5.전용공업용	(생략)	※ (현행과 같음)	
※ (생략)		※ (현행과 같음)	

地方公企業法

第14條 (獨立採算) ①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에 있어서 그 經費는 당해 企業의 收入으로 負擔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方直營企業의 經費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나 다른 特別會計가 負擔金 기타의 方法에 의하여 負擔한다.<改正 1992.12.8>

1. 經費의 性質上 당해 地方直營企業의 收入으로 負擔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經費

2. 당해 地方直營企業의 性質上 그 經營에 隨伴한 收入만으로 充當하는 것이 客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經費

②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는 災害·復舊 기타 특별한 事由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豫算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나 다른 特別會計로부터 財政的 支援을 받을 수 있다.<改正 1992.12.8>

第22條 (料金) ①地方自治團體는 地方直營企業의 給付에 대하여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料金を 徵收할 수 있다.<改正 1992.1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料金は 적정하여야 하고, 地域間 料金水準의 衡平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決定함에 있어서는 당해 地方直營企業이 제공한 給付의 原價를 報償함과 아울러 企業으로서 繼續性を 維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改正 1980.1.4, 1992.12.8>

③제1항의 規定에 의한 요금의 산정방식은 營業비용 및 자본비용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④料金の 徵收에 관하여는 地方稅徵收의 例에 의한다.

地方公企業法施行令

제18조 (요금의 산정방식)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6.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6.19>

地方自治法

第127條 (使用料) 地方自治團體는 公共施設의 이용 또는 財産의 사용에 대하여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第130條 (使用料의 徵收條例등)①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の 徵收에 관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1.11>

②詐欺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の 徵收를 免한 者에 대하여는 그 徵收를 免한 額의 5倍이내의 過怠料에, 公共施設을 부정사용한 者에 대하여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하는 規定을 條例로 정할 수 있다.

③第2項의 過怠料處分에 관한 節次는 第13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31條 (使用料등의 賦課·徵收, 異議申請)①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は 公平한 방법으로 賦課 또는 徵收하여야 한다.

②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の 徵收는 地方稅 徵收의 예에 의한다.

③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の 賦課 또는 徵收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그 處分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日이내에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異議申請할 수 있다.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異議申請을 받은 날로부터 60日이내에 이를 決定・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⑤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の 賦課 또는 徵收에 대하여 行政訴訟를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 處分廳을 當事者로 하여 訴를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期間내에 決定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第5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決定期間이 경과한 날부터 90日이내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99.8.31>

⑦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의 방법과 節次등에 관하여는 地方稅法 第73條 및 第75條 내지 第7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水 道 法

第23條 (供給規程)① 一般水道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돗물의 料金, 給水裝置에 관한 工事의 費用負擔 기타 수돗물의 供給條件에 관한 規程을 정하여 수돗물의 供給을 開始하기 전까지 認可官廳(廣域上水道의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을 말한다. 이하 第48條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언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水道事業者가 地方自治團體인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1994.8.3, 1997.8.28>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함에 있어서 당해 수도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大田廣域市上水道給水條例

제26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별표 3의 구경별 기본요금을 합산한 요금으로 한다. <개정 2002. 05. 24 조례 제3110호>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4에 의한 업종구분표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수 있다.<개정 92.10.21 조례 제2251호>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수 있다.

③삭제 <1995.12.30 조례 제2508호>